

## 기 준 일 공 고

(주) 블루홀은 상법 제354조와 정관의 각 규정에 따라,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명부 확정  
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,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 주식교  
환 관련 의결권 (반대의사 표시)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— 다 음 —

1. 기준일: 2018 년 1 월 4 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없음

2017년 12월 20일

주식회사 블루홀

대표이사 김효섭

명의개서대리인

주식회사 국민은행